

창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가합10258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9.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600,000,000원을 변제기 2023. 12. 31., 이자 연 10%(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리금의 상환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C은 그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대여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C은 2023. 9. 30.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C로부터 2024. 1. 5.부터 2024. 3. 8.까지 합계 28,000,000원(= 2024. 1. 5. 10,500,000원 + 2024. 1. 9. 11,500,000원 + 2024. 1. 31. 3,000,000원 + 2024. 3. 8.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변제액이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각 변제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C이 원고에게 변제한 위 각 금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위 각 변제금은 2023. 9. 20.부터 2023. 9. 30.까지 발생한 이자 1,803,278원(= 600,000,000원 $\times$ 11/366 $\times$ 10%)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6,196,722원은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23. 10. 1.부터 2024. 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6,311,475원(= 600,000,000원 $\times$ 107/366 $\times$ 15%)의 변제에 충당되어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2024. 1. 16.을 기준으로 원금은 600,000,000원, 지연손해금은 114,753원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 202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채권의 주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C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나. 판단

2023. 12. 28.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3회합1002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회생절차에서 2024. 2. 26. 이 사건 보증채권의 주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증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정, 판사 남승우, 판사 김나영

1) 원고는 변제충당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114,753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